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학원설립·운영자등의 책무)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 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강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학원시설)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장(체육시설)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 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3조의3(단위시설의 기준)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하되,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4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35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4와 같다.
5.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은 별표5와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 시설을 갖출 것

제3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①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

②제3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2의 기준으로 본다.

④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3제4호 내지 제6호의기준에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①영 제5조의2제1항에 의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②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이나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과 동일 경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3과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의6(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① 교육감은 제3조의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제목 중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중 "별표 3과 같다"를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 교습과정은 3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강사"를 "강사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영 제7조제2항 및 12조"를 "영 제7조제2항, 영 제12조 및 제3조의5"으로 하며,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을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수강료"를 "수강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2항 및 영 1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중 "수강료를"을 "수강료 등을"로 하고, 동조제2항 중 "학원"을 "학원 등"으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교습과정 변경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2 별표1에서 정한 교습과정으로 본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간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제2조의2 개정규정에서 정한 배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동조에서 정한 배상기준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교육분야 학원 설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사설특수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특수교육분야 학원으로 설립·등록하여야 한다.

[별표1]

학원의 시설규모(제3조의4 제1항 관련)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 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검정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별표3에 의함	
			검정고시	480㎡ 이상	
			보 습	70㎡ 이상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초·중·고 학생 주된 대상 실용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2에 의함	
	독 서 실	독 서 실		12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 교육 활동	별표2에 의함	
	기 타	기 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교습	70㎡ 이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영제3조의2 별표1참조		별표2에 의함	
		경영·사무·관리		70㎡ 이상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등	별표2에 의함	
	독 서 실	학교교과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비 고 : ㅇ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체능(무용포함), 실용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별표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제3조의4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1.기계 (기계공작, 기계정비, 기계설계, 기계제도)	가. 시설 (1)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일반, 건설, 기계설계 과정 (가) CAD설계용 개인용 PC 10대 이상 (1인 1대) (나) CAD설계용 프로그램 10copy 이상 (다) CAD도면 시연슬라이드 스크린 1대 이상 (라) CAD도면 시연프로젝터 1대 이상 (2)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과정 (가) 자동화프로그램용 개인PC 5대 이상 (나) PLC실습용 판넬 3대 이상 (다) PLC구동 콤프레서 1대 이상 (라) 자동화 제어용 기기 1대 이상 (3) 공조냉동, 용접 과정 (가) CO2용접기 2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 2대 이상 (다) Ar용접기 1대이상 (라) 용접용 토치, 가스게이지, 그라인더 각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1.중기운전>	가. 시 설 (1) 운전실습장 350㎡ 이상 (2)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제품 2종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2.자동차정비, 중기>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9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자동차 3대 이상 (2) 가솔린기관 3대 이상 (3) 디젤기관 1대 이상 (4) 변속기 2대 이상 (5) 차동기 2대 이상 (6) 차량용 리프트 1대 이상 (7)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 (8) 휠바란스 1대 (9) 휠얼라이먼트 1대 (10) 배터리 테스터기 1대 (11) 배기가스 테스터기 1대(CO,HC 겸용) (12) 디젤매연테스터기 1대 (13)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14) 타이어 탈착기 1대 (15) 에어콘 가스주입기 1대 (16) 중기의 경우 해당 중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3. 금속 (귀금속 가공)	가. 시설 (1)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로러)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공 및 세라믹	가. 시설 (1)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위험물 분야 과정 (가) 위험물 동영상교육용 컴퓨터 5대 이상 (나) 위험물 동영상 슬라이드용 스크린 1대 (다) 위험물 동영상 교육용 프로젝터 1대 이상 (2) 화공, 화학, 세라믹 과정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등기기 5종 이상 (3) 화약류제조 과정 화약류의 제조, 분석, 시험에 필요한 기기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전기 (전기재료, 전기기기, 전기공사)	가. 시설 (1) 실습실 90㎡ 이상 (2) 전기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동기 특성 실험장치 5set (2) 수전, 송전, 배전실 (가) 특고압용 변압기 150KVA이상 3대 (나) 특고압용 인터럽터 스위치 1대 (다) COS 6대 (라) 특고압용 3상 전력용 콘덴서 10KVA 이상 1대 (마) 22.9KV용 피뢰기 3대 (바) 22.9KV MOF 1set (사) 큐비클 5대 이상 (3)오실로스코프,역률계,절연저항계,전압계,전류계,주파수계, 전력계(0.2rmq)각10대 이상 (4) 실험·실습대(4-6인용) 5대 이상 (5) 전기공사 실습 작업판(1200X1800m)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통신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정보통신 운용과정 (가) 파일 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이상) 1대 이상 (나) 하드디스크 20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다) 프린터 2대 이상 (라) 허브(20port이상)1개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6. 통신	(2) 정보통신설비과정 (가) 모뎀(Modem) 10대 이상 (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 오실로스코프(20MHz 이상) 5대 이상 (마) 주파수발진기(100MHz 이상) 5대 이상 (바) 주파수카운터(100MHz 이상) 5대 이상 (사) 전계강도측정기 5대 이상 (아) 신호감쇠기 5대 이상 (자) 직류전원 공급기(30V, 3A이상) 5대 이상 (차) 비트패턴발생기 2대 이상 (카) 프로토콜 아날라이저 2대 이상 (타) 정보통신 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3) 무선설비과정 (가) 회로시험기 10대이상 (나) 오실로스코프(20MHz이상) 5대이상 (다) 주파수발진기(2MHz 이상) 5대 이상 (라) 주파수카운터(100MHz 이상) 5대 이상 (마) 전계강도측정기 5대 이상 (바) 신호감쇠기 5대 이상 (사) 직류전원 공급기(30V,3A 이상) 5대 이상 (아) 스펙트럼 분석기(1GHz 이상) 1대 이상 (자) 벡터스코프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전자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나) 신호발진기(2MHz 이상) 5대 이상 (다) 오실로스코프(20MHz 이상) 5대 이상 (라) 직류전원 공급기(30V,3A이상) 5대 이상 (마) 트랜지스터수신기 10대 이상 (바) 녹음기 10대 이상 (사)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10w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전파전자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텔레비전, 패턴발생기(NTSC방식) 1대 이상 ③ 텔레비전 전계강도 측정기 1대 이상 ④ 백터스코프 1대 이상 ⑤ 고전압계 1대 이상 ⑥TV 10대 이상 (나) 전자기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프린터 2대 이상 ③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④ 컴퓨터(PC)기기 10대 이상 (라) 영상재생장치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③ 영상재생장치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8. 조선	가. 시설 (1) 실습실 90㎡ 이상 (2) 설계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이상 (2) 일반 공구 20set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항공	가. 시설 실습실 12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공기정비 및 항공기조립 과정 (가) 비행기(4인승이상) 1대 이상 (나) 헬리콥터(3인승이상) 1대 이상 (다) 항공기용 공랭식 왕복엔진 ① 수평대향형 4기통 및 6기통 각 1대 이상 ② 수직 대향형 1대 이상 ③ 성형 1대 이상 (라) 항공기용 제트 엔진 ① 터보-팬 1대 이상 ② 터보-제트 1대 이상 ③ 터보-샤프트 또는 터보-프롭 1대 이상 (마) 리벳건, 드릴링머신 20set 이상 (바) 유압, 랜딩기어 등 각 계통 Mock-up 5종 이상 (사) 수공구(30종) 20set 이상 (2) 항공운항과정 (가) 여객기객실 Mock-up(좌석 20조) 1set 이상 (나) 항공용 구명동의 20조 이상 (다) 항공용 산소마스트 20조 이상 (라) Catering Cart 4조 이상 (마) 여객기용 Galley(주방시스템) 1조 이상 (바) 여객기용 Lavatory(화장실)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토목, 건축	가. 시설 설계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의복, 섬유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자수재봉기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 양재·한복 과정 (가) 미싱 5대 이상 (나) 마네킹 3개 이상 (다) 오버로크 재봉틀 1대 이상 (4) 섬유과정 (가) 방사 및 방적기계 설비 2종 이상 (나) 정련표백, 염색가공 실습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12. 광업자원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화약류관리 과정 화약 및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진동측정기, 주설 전류 측정기, 모의발파기기 등 3종 이상의 실습교구 (2)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과정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실습에 사용되는 채광, 탐사, 선광실무용 실습기기 3종 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3. 국토개발 (조경, 도시계획, 지적)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도면설계용 제도작업대 10개 이상 (2) 삼각자, T자 각각 10개 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농림 <14-1. 동물>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300㎡ 이상 (나) 동물 5종 이상 (다) 오·폐수 처리장치 1조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5점 이상 (나) 박제제작 셋트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set (3) 모피피혁과정 (가) 화학약품처리장 : 15㎡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 탱크전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농림 <14-2. 임업, 원예>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실습지 900㎡ 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 해양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나) 환등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갑판과 ① 정박계선기구(앙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②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 ③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④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⑤ 수리용 공구 1식 이상 (나) 기관과 ①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②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③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④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16. 에너지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 환경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수질과정 (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대 이상 (나) 수질 및 대기환경 분야 실험기기 10대 이상 (2) 자연환경과정 (가) 생태복원 설계 제도기기 10대 이상(1인 1대 기준) (나) 생물분류, 토양환경과정 실습에 필요한 기기 2대 이상 (3)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소음진동측정, 폐기물처리 실무에 필요한 기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 공예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공작대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 교통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통량조사 장비류 2세트 이상 (2) 사고분석 및 재현용 기자재류(컴퓨터 및 재현프로그램) 2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안전관리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강의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가스과정 (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나) 오스타기 10대 이상 (다) 파이프렌치, 몽키, 스패너 등 10대 이상 (라) 파이프커터기 2대 이상 (마) 밴딩머신 1대 이상 (바) 바이스 10대 이상 (사) 배관 및 용접용 작업대(880X550m/m, 2인용) 5대 이상 (아) 가스, 전기용접기 각 2대 이상 (2)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 소방설비, 인간공학과정 (가) 동영상 슬라이드용 스크린 1대 (나) 동영상 교육용 프로젝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디자인 <21-1. 산업디자인>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나)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1. 디자인 <21-1. 산업디자인>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3) 섬유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쇼윈도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쇼 윈도우용 마네킹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디자인 <21-2. 패션디자인>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 모타 미싱 10대 이상 (4) 패턴 실습대 일시수용능력인원 4인당 1대 (5) 인대(마네킹) 5대 이상 (6) 컴퓨터 2대 이상(CAD)수업시 2인당 1대 (7) 컴퓨터 미싱 3대 이상 (8) 오바로크 2대 이상 (9) 아이롱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2. 이·미용 <22-1. 이용>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이발기구, 면도, 가위 각 10개 이상 (5) 대형거울 : 이발 의자수에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2. 이·미용 <22-2. 미용>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헤어과정 (가) 인두(마네킹) 20개 이상 (나) 건발기(드라이) 10조 이상 (다) 파마기 20종 (라) 미안대(거울) 10조 이상 (마) 샴푸대 2대 (바) 세면장 및 급수시설 (사) 실습대(4인용) 6대 이상 (아) 컷트기구 10개 (자) 셋팅기구 10개 (2) 피부 미용 과정 (가) 맛사지 침대 10개 (나) 미안대(거울) 10조 이상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3. 식음료품 <23-1. 조리>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대 일시수용능력인원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1,000L이상) 1대 이상 (3) 오븐기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5) 제독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식음료품 <23-2. 제과, 제빵>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빵슬라이서 1대 이상 (2)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3)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4) 실습대 8대 이상 (5)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6) 저울(5Kg 이상) 10대 이상 (7)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1대 이상 (8) 반죽로라(DOUGH SHERTER) 1대 (9) 냉장고(1,000L) 1대 이상 (10)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식음료품 <23-3. 조주>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 :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4. 포장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5. 인쇄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2종 이상 (2) 제판장비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사진	가. 시설 (1) 실습실 70㎡ 이상 (2) 암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4종 이상 (1,000만화소 이상 디지털카메라포함) (2) 확대기 2대 이상 (3) 필름스캐너 1대 이상 (4) 디지털프린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7. 피아노조율	가. 시설 실습실 :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 작업대 2대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7. 피아노조율	(2) 조율 튜우너, 튜링 햄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 고르기 자, 다이얼 게이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속기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이상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전산회계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전문상담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1. 텔레마케팅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화단말기 1대 이상 (2) 헤드셋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2. 애견미용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2) 욕조 2대 이상 (3) 드라이어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3. 장의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염습대 10대 이상 (2) 수의(남, 여 구분)10세트 (3) 관 2대 이상 (4) 실습용마네킹 5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4.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5. 항공승무원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 이상 설치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35. 항공승무원	(2) 거울을 갖춘 화장대 10조 이상 (3) 걸음걸이 연습에 필요한 워킹대(마루판 등)설치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 전자상거래,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 웨어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1대 이상 다. 기타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 출판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컴퓨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 영상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6mm 디지털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베타캠 VTR 2대 이상 (4) 비디오 카메라 또는 캠코더 10종 이상 (5) TV 모니터 10대 이상 (6) 조명기구 10종 이상 (7) 간이 편집 자막기 3종 이상 (8) 오디오 더빙용 오디오 set 5종 이상 (9) 논리니어 편집기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9. 음반(음반제작)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가) 녹음 조정실 30㎡ (나) 녹음 스튜디오 30㎡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믹서(32채널 이상) 1대 (2) Adat card 1대 이상 (3) 앰프 1대 이상 (4) 마이크 프리앰프 1대 (5) 오디오 컨버터 1대 (6) 음향 이펙터 1대 (7) 마이크로 폰(녹음용) 1대 (8) 모니터 앰프 1대 (9) 녹음프로그램 1개 이상 (10) 컴퓨터 1대 이상 (11) 컴퓨터용 오디오 컨버터 1대 (12) Adat & HD Record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0. 영화, 연극, 모델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영화기술과정 (가) 현상실 10㎡ 이상 (나) 녹음실 15㎡ 이상 (다)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2)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각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41. 방송	가. 공통 시설 강의실 30㎡ 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영상스윗처(VIDEO SWITCHER UNIT 12CH 이상) 1대 ②영상효과기(S.E.G 12CH 이상) 1대 ③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2CH 이상) 1대 ④영상2:1편집기(VIDIO EDIT 2:1EDITOR) 1대 ⑤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⑥디지털플레이(DV25급 PLAY DECK) 1대 ⑦디지털녹화기(DV25급 REC DECK) 1대 ⑧베타플레이어(BETACAM PLAYERDECK) 1대 ⑨베타레코더(BETACAM REC DECK) 1대 ⑩문자발생기(COMPUTER GRAPHICS) 1대 ⑪논리니어편집기(NON LINER EDIT) 3대 ⑫파형계측기(WAVEFORM MONITOR) 1대 ⑬위상계측기(VECTOR SCOPE) 1대 ⑭사운드 재생기(CD PLAYER) 1대 ⑮ MIONOTOR 10대 이상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베타캄 고화질 카메라(BETACAMCAMERA) 2대 이상 ②EFP용 카메라(CCU 포함) 2대 이상 ③DV25급 CAMERA 2대 이상 ④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③영상 오디어모니터 2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편집실 ①기재실 30㎡ 이상 ②설비 및 교구 ㉮LE(liner edit)edit 1:1편집기 2set이상(플레이레코드) ㉯S-VHS 또는 DV25급 DECK ㉰논리니어 편집기 2대 이상 ㉱영상스윗처(VEDIO SWITCHER UNIT 12CH 이상) 1대 ㉲영상효과기(S.E.G 6CH 이상) 1대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2CH 이상) 1대 ㉴색 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디지털 플레이(DV25급 PLAY DECK) 1대 ㉶디지털 녹화기(DV25급 REC DECK) 1대 ㉷모니터 6대 이상 (나) 녹음실 ① 기재실 60㎡ 이상 ㉮녹음조정실 30㎡ 이상 ㉯녹음 스튜디오 30㎡ 이상 ② 설비 및 교구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8CH 이상) 1대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41. 방송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방송용 스피커 시스템(SPEAKER) 2대 이상 ㉲영상음반기(COMPUTER DISK ELECTRIC GRAPHIC) 1대 ㉳MULTI TRACK RECORDER 1대 ㉴CASSETTE DECK 1대 ㉵CD DECK 1대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다) 야외녹화장비 ①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EFP CAMERA) 3대 이상 ②방송용 전기용 조명기(쥬피터 LIGHT) 5대 이상 ③방송용 휴대용 조명기(SUNGUN) 1대 이상 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종합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방송 제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방송기술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아나운싱·리포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가)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나) 실습실 90㎡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편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 및 (3)의 (가)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촬영·영상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명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41. 방송	(9) 음향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2) 및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성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①"가"목의 공통 시설 ②기재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 3대 이상 ②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 3대 이상 ③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 1대 이상 ④복호기(DECORDER) 1대 이상 ⑤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⑥음향분배기(AUDIOO DIVIDER AMP) 1대 ⑦칼라화면발생기(COLOR PATTERNGENERATOR) 1대 ⑧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⑨레벨메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⑩채널혼합기 1대 ⑪채널변환기(8CH이상) 1대 ⑫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⑬파형계측기(WAVEFORM MONITOR)1대 ⑭위상계측기(VECTOR SCOPE)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2. 캐릭터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3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3. 관광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10종 이상 (2) 한국지도(1/500,000), 세계지도 (3) 실습실 당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이상 (4) 실습실 당 시청각기구 및 카메라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4. 간호조무사	가. 시설 (1) 강의실 60㎡ 이상 (2)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패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44. 간호조무사	(5) 주사기 2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8) 침대 2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2) 인공배뇨셀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5. 펜글씨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책·걸상 또는 실습용 탁자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6. 주산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1개 이상 (2) 속도측정 초시계 1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7.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과정별 기준 (가) 악기과정 ① 주요 실습용 악기 10대 이상 ② 기타 교습과목 악기 각 5대 이상 (나) 실용음악 과정 ①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악기 5대 이상 ② 기타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설비 (다) 성악과정 ① 현대성악 : 악기 1대 이상 ② 고전성악 : 악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8. 미술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또는 실습용 탁자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이상 (2) 과정별 기준 소묘, 수채화(서양화), 한국화(동양화), 디자인, 만화, 포트폴리오, 조소과정 석고, 정물대, 모포 등 교습과정별로 필요한 교구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9. 무용, 전통무용, 현대무용	가. 시설 (1) 무용실 7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3) 바(bar) (현대무용) (4) 북 또는 장고 등 악기 1개 이상 (전통무용)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50. 서예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지필묵 10개 이상 (2) 서법도서 1권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1. 꽃꽂이, 꽃기예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실습용 작업대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 만화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라이트박스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3. 화술, 웅변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마이크 1대 이상 (2) 연단 및 녹음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4. 마술(매직)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마술 교구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5. 바둑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바둑알 포함) 10조 이상 (2) 대형 바둑판 1개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6. 독서실	가. 시설 열람실 12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열람대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7. 특수교육 (언어치료,작업치료, 물리치료,놀이치료,감 각운동 등)	가. 시설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나. 교구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 치료교육과정별 필요교구 3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
(제3조의5 제2항 제3호 관련)

<table>
<tr><th>구 분</th><th>시설·설비 기준</th></tr>
<tr><td>강의실 등</td><td>가. 강의실 : 660㎡ 이상
나. 보건실 : 33㎡ 이상
다. 휴게실 : 66㎡ 이상(남, 여 별로 구분 가능)
라. 체육장(체육시설) : 350㎡ 이상 [단, 체육장(체육시설)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로서 강의실이 속해있는 건물과 동일 경계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학원 내 실내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내 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음)</td></tr>
<tr><td>숙박시설</td><td>가. 시설
1) 기숙사 면적(내측간의 면적) : 정원 × 4㎡ 이상
[단, 개별 숙소는 최소 4인실로 설치하되,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5㎡ 이상]
2) 공동 세면실 또는 샤워실
-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정원 x 0.4㎡ 이상(남, 여 구분)
3) 세탁실 1실 이상(남·여 구분)
나. 설비
1) 세탁기 (정원을 고려한 수량)
2) 사물함(옷장) 1인당 1개
3) 급수시설(정원을 고려한 수량)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td></tr>
<tr><td>급식시설</td><td>가. 조리실
1) 면적
<table>
<tr><th>급식 인원수(정원)</th><th>면적</th></tr>
<tr><td>50인 이하</td><td>14㎡</td></tr>
<tr><td>51인~100인</td><td>14㎡+0.14㎡×(급식인원수-50)</td></tr>
<tr><td>101인~150인</td><td>21㎡+0.14㎡×(급식인원수-100)</td></tr>
<tr><td>151인~200인</td><td>28㎡+0.14㎡×(급식인원수-150)</td></tr>
<tr><td>201인~250인</td><td>35㎡+0.14㎡×(급식인원수-200)</td></tr>
<tr><td>251인~300인</td><td>42㎡+0.14㎡×(급식인원수-250)</td></tr>
<tr><td>301인~600인</td><td>49㎡+0.05㎡×(급식인원수-300)</td></tr>
<tr><td>601인~900인</td><td>64㎡+0.04㎡×(급식인원수-600)</td></tr>
<tr><td>901인~1,200인</td><td>76㎡+0.04㎡×(급식인원수-900)</td></tr>
<tr><td>1,201인~1,500인</td><td>88㎡+0.04㎡×(급식인원수-1,200)</td></tr>
<tr><td>1,501인 이상</td><td>100㎡+0.02㎡×(급식인원수-1,500)</td></tr>
</table>
2) 시설·설비 기준
<table>
<tr><th>구 분</th><th>기 준</th></tr>
<tr><td>1. 배수설비</td><td>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td></tr>
<tr><td>2. 가열설비</td><td>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td></tr>
<tr><td>3. 환기·조명설비</td><td>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2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td></tr>
<tr><td>4. 세척설비</td><td>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td></tr>
<tr><td>5. 방충·방서 등 설비</td><td>창문 및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td></tr>
<tr><td>6. 기타 시설·설비</td><td>배선대등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시설·설비 기준</th></tr>
<tr><td>급식
시설</td><td>
3) 기구기준
<table>
<tr><th>품목</th><th>비고</th></tr>
<tr><td>1. 개수대</td><td>조리용과 후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td></tr>
<tr><td>2. 조리작업대</td><td>높이 80㎝ 내지 90㎝로서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td></tr>
<tr><td>3. 냉장고</td><td>급식인원을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td></tr>
<tr><td>4. 식기 보관장</td><td>급식인원을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td></tr>
<tr><td>5. 조리용구 보관장</td><td>급식인원을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td></tr>
<tr><td>6. 제반기 또는 밥솥</td><td>급식인원을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td></tr>
<tr><td>7. 국솥</td><td>급식인원을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td></tr>
<tr><td>8. 조리용구</td><td>적정수량의 조리에 필요한 각종 용구를 갖춘다.</td></tr>
<tr><td>9. 저울</td><td>100㎏·10㎏ 및 1㎏용 각 1대를 갖춘다.</td></tr>
<tr><td>10. 계량컵</td><td>1개 이상을 갖춘다.</td></tr>
<tr><td>11. 조리실용 시계·조리용온도계 및 온·습도계</td><td>각 1개씩을 갖춘다.</td></tr>
<tr><td>12. 조리종사자용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마스크</td><td>조리종사자별로 각 한벌씩 갖춘다.</td></tr>
<tr><td>13. 식품절단기</td><td>권장사항</td></tr>
<tr><td>14. 식품박피기</td><td>권장사항</td></tr>
<tr><td>15.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td><td>권장사항</td></tr>
<tr><td>16. 자동세척기</td><td>권장사항</td></tr>
<tr><td>17. 식품운반용 수레</td><td>권장사항</td></tr>
<tr><td>18. 세미기</td><td>권장사항</td></tr>
<tr><td>19. 식기소독기</td><td>권장사항</td></tr>
<tr><td>20. 배식대</td><td>급식인원을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td></tr>
<tr><td>21. 식판</td><td>급식인원을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td></tr>
<tr><td>22. 기타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기구</td><td>급식인원을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td></tr>
</table>
나. 식품보관실
1) 시설·설비 기준
<table>
<tr><th>품목</th><th>비고</th></tr>
<tr><td>1. 식료품보관용 선반 및 깔개</td><td></td></tr>
<tr><td>2. 환기설비</td><td>환풍기 등을 설치한다.</td></tr>
<tr><td>3. 방습시설</td><td></td></tr>
<tr><td>4. 방충·방서설비</td><td></td></tr>
<tr><td>5. 배수설비</td><td></td></tr>
<tr><td>6. 조명설비</td><td>식품식별에 적합한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td></tr>
<tr><td>7. 온·습도계</td><td></td></tr>
<tr><td>8. 기타 식료품의 검수·계량에 필요한기기</td><td></td></tr>
</table>
다. 식당
1) 면적 : 정원 x 1/2 x 1㎡
2) 식탁 및 의자 : 정원 1/2이 일시 사용 가능한 수량
3) 급수시설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라. 탈의실 또는 휴게실 1실 이상
</td></tr>
</table>

[별표 4]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의3 제4호 관련)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4.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5.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별표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제3조의3 제5호 관련)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자연조명)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도(인공조명)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 (학원 설립·운영자등의 책무)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 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원 등 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정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강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조(시설기준)①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 ②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로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감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	제3조(시설기준) <삭제>

(다음 페이지에 계속)

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2의 기준으로 본다. ④영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제3조의2 (학원시설)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장(체육시설)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 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신설>	제3조의3 (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로 이하로 함)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하되,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4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35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

(다음 페이지에 계속)

	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4와 같다. 5.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은 별표5와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출 것
<신설>	제3조의4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 ②제3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2의 기준으로 본다. ④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3제4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제3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영 제5조의2제1항에 의거

(다음 페이지에 계속)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②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이나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과 동일 경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3과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제3조의6(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① 교육감은 제3조의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페이지에 계속)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학원의 교습시간)①학원의 교습은 05:00부터 22:00(성인 24: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제6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인원)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인원은 별표3과 같다.	인원)---------- ---------- ----------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 교습과정은 3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한다.
제8조 (강사의 채용 및 해임통보) ①영 제7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채용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원에서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해임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통보) ①영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3조의5의----------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 ②-------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
제9조(수강료 금액 통보)①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5조제1	제9조 (수강료 등 금액 통보) ①영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변경할 때에는 7일 전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
②교육장이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조정할 경우에는 학원으로부터 관계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②----------수강료 등을----------학원 등----------.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정에 의한다. 제3조 (교습과정 변경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2 별표1에서 정한 교습과정으로 본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간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에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제2조의2 개정 규정에서 정한 배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동조에서 정한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교육분야 학원 설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사설특수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특수교육분야 학원으로 설립·등록하여야 한다.